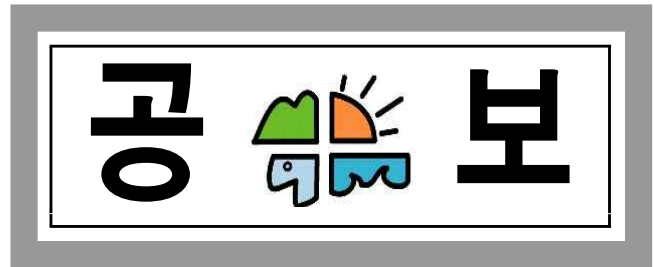


#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         |
|---|---------|
| 선 | 기 관 의 장 |
| 람 |         |



제987호 2016년 4월 8일(금)

## 조 례

- 속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2
- 속초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 3
- 속초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6
- 속초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 ..... 9
- 속초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17
- 속초시축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 폐지조례 ..... 19
- 속초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 ..... 20

## 규 칙

- 속초시 도문농요전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23

## 공 고

-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 23

|     |  |  |  |  |  |  |  |  |  |
|-----|--|--|--|--|--|--|--|--|--|
| 회 랑 |  |  |  |  |  |  |  |  |  |
|-----|--|--|--|--|--|--|--|--|--|

발행 : 기 획 감 사 실 (전화 : 639-2415, FAX : 639-2106)

속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4월 8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조례 제 2462 호

## 속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속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7월 11일”을 “6월 8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1월 23일”을 “11월 28”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출납폐쇄기한이 단축되어 6월말까지 결산서의 의회 승인이 필요하며,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해 정례회의 집회일을 변경하고자 함.

속초시 주민자율방법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4월 8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조례 제 2463 호

## 속초시 주민자율방법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속초시 주민자율방법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속초시 주민자율방법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지역의 방법활동을 통한 범죄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 및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주민자율방법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속초시 주민자율방법대(이하 “방법대“라 한다)란 속초시의 각 동에서 방법의식 및 봉사정신이 투철한 지역 주민으로 제5조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주민조직으로 말한다.
2. “속초시 자율방법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각 방법대의 대장과 임원을 회원으로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에 등록되어 활동하는 방법대와 연합대에 적용한다.

제4조(연합대의 구성과 기능) ① 연합대는 각 방법대의 대장과 임원을 위원으로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하며, 방법대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② 연합대는 합동순찰, 합동캠페인, 공익활동 등 방법대의 각종 협력사업에 대해 계획수립 및 주관하고, 방법대의 활동을 지원·지도하며, 이 경우 활동상황을 기록·보관하고 그 내용을 시장에게 통보한다.

제5조(임무) 방법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지역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 활동 및 범죄 신고
2. 아동·청소년 선도와 미아·기아(棄兒) 및 가출인 보호
3.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활동
4. 어린이보호구역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5. 재해, 재난 발생 시 구민구호 활동
6. 그 밖에 시장이 지역방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6조(경비지원 등)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방법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피복비, 야식비, 상해보험가입비, 유류비 등 방법활동에 필요한 소모성 운영비
2. 방법초소 설치 및 그 내부 환경개선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진하는 사업비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방법대의 활동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방법대의 활동 중 방법대 또는 방법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행정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제7조에 따른 지도·감독을 거부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한 때에는 해당 지원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방법대 및 연합대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 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표창) 시장은 방법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시정발전에 기여한 방법대 및 모범대원에게 「속초시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9조(준용) 방법대 및 연합대의 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활동하고 있는 방법대와 연합대는 이 조례에 따라 등록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 개정이유

- 지역 방법활동을 통하여 범죄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 및 교통·기초질서 계도와 각종 공익행사 등 봉사 활동하고 있는 주민자율방법대에 대하여 임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정하고자 함
-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속초시 주민자율방법대의 활동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개선함으로서 운영의 내실 및 활성화를 기하고자 함

속초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4월 8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조례 제 2464 호

## 속초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4조제2항, 「아동복지법」 제4조제1항, 「도서관법」 제4조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속초시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 및 도서 등을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의 장난감 및 도서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장난감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난감도서관”이란 장난감 및 도서 등이 필요한 회원에게 장난감 및 도서 등을 이용·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여자료”란 이용자가 제공받는 장난감 및 도서 등의 자료를 말한다.
4. “회원”이란 제5조에 따라 장난감도서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설치) 장난감도서관은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속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기능) 장난감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영유아 장난감 및 도서 등의 구입 및 대여관리

2. 영유아의 건강한 놀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
3. 그 밖에 영유아를 위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제5조(회원가입) ①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회원가입 대상은 영유아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 보호자로서,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대여자료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③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는 회원은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자료, 비품 및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한 사람
2. 대여 받은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재 대여한 사람
3. 그 밖에 운영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

제8조(대여료) 대여료는 무상으로 한다.

제9조(대여기간 등) ① 장난감 대여기간은 1회에 14일 이내로 한다.

② 장난감 1회 대여수량은 2점 이내로 하며, 월 이용횟수는 3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10조(이용시간) ① 장난감도서관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관한다. 다만,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장난감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중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로 한다. 다만, 1월1일과 설·추석 연휴기간이 일요일과 겹칠 때에는 휴관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임시 휴관일

제11조(기증) 시장은 보다 많은 영유아가 이용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이나 단체, 개인 등의 기증이 있을 때에는 도서·장난감 등의 기부를 접수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장난감도서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제정이유

속초시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장난감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난감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속초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4월 8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조례 제 2465 호

## 속초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

속초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속초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 따라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는 속초시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보장 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

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  
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제3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시민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자원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양성평등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제2장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및 추진체계

제6조(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가. 양성평등 촉진 및 양성평등문화 확산

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다.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

### 2.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자원 조달방법

### 3.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조에 따라 양성평등정책에 관

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속초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 등 성 주류화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자문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여성가족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제20조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1. 양성평등, 여성·가족 정책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활동 참여 경력 및 정책 개발 능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위촉 해제된 경우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

판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속초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양성평등 소관업무 담당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제12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할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한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3장 양성평등정책 촉진

제17조(성인지 통계) 시장은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성인지 통계를 산출, 보급하고 각종사업계획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18조(성인지 교육) 시장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성인지 교육을 속초시 및 소속기관 직장 내(이하“직장 내”로 한다.) 직원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장 양성평등 참여 및 문화 확산

제19조(적극적 조치) ① 시장과 소속기관, 공공기관의 장은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제20조(시장 참여) 시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의 전문인력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공직 참여) ① 시장은 양성평등한 공직 참여를 위하여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의2에 따른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2조(경제활동 참여) ① 시장은 근로자의 모집·채용·교육훈련·승진·퇴직등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여성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기업에 자금을 지원할 때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제23조(모·부성의 권리 보장) 시장은 임신·출산·수유·육아에 관한 모·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4조(일·가정 양립지원) 시장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의 제공
2. 방과 후 아동 돌봄 등 양질의 양육서비스 확충

3. 육아휴직제, 유연근무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
4. 남성의 육아휴직 장려 및 활성화
5. 일·가정 양립에 관한 상담 지원
6. 가족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
7. 그 밖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5조(성차별의 금지) ① 시장은 문서, 회의, 근무형태 등에서 성차별을 금지·예방하여 성평등한 직장문화 확립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을 접수·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 시 관련자에 대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피해자가 해고 및 그 밖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6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① 시장은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예방 및 성희롱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예방 및 성희롱 방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양성평등 관점에서 통합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성희롱 피해자와 상담하고, 가해자를 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7조(복지증진) ① 시장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28조(건강증진) 시장은 보건의료서비스에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을 도모하고, 생애주기에 따른 여성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증진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9조(양성평등한 가족) ① 시장은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에 따라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한부모가족, 장애인가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이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0조(양성평등 의식 제고) 시장은 직장 및 가정·학교·사회교육시설·기업 등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양성평등주간 행사) 시장은 법 제38조에 따른 양성평등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하는 공공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및 연구발표행사
2.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표창 및 격려
3.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4. 그 밖에 양성평등 촉진 등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32조(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법 제51조에 따라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경우에는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양성평등 참여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
2.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사업
3.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은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배정에 관한 특례) 제2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제3조(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속초시여성발전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속초시 양성평등위원회로 본다.

### ◇ 개정이유

- 종전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2015. 6.22)됨에 따라 양성평등정책의 촉진, 양성평등 참여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등 개정된 법률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내용을 새롭게 반영하고,
-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와 공공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하여 능동적인 양성평등 시책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속초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4월 8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조례 제 2466 호

## 속초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속초시장이 부과·징수한다.

**제3조(부과대상)**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위반한 과태료 부과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행한 사람
2. 법 제2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일명칭을 사용한 사람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과태료 부과 기준

(안 제4조 관련)

(단위 : 천원)

| 근거법령         | 위 반 사 항                                                     | 위반횟수별 부과금액 |       |       |
|--------------|-------------------------------------------------------------|------------|-------|-------|
|              |                                                             | 1차         | 2차    | 3차    |
| 「지역보건법」 제34조 | 1. 「지역보건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행한 사람 | 1,000      | 2,000 | 3,000 |
|              | 2. 「지역보건법」 제2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건소등으로 동일명칭을 사용한 사람               | 1,000      | 2,000 | 3,000 |

주석 1.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각 위반행위별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단, 4차 위반행위부터는 3차 위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 ◇ 제정이유

의료기관이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면서 보건소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행한 경우와 관련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아닌 자가 각각의 동일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법제화함으로써 처분의 공평성 및 명확성을 기하고자 함.

속초시축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 폐지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4월 8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조례 제 2467 호

## 속초시축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 폐지조례

속초시축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폐지이유

「의료법」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탁의료인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속초시축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를 제정·시행 하여 왔으나 공중보건의사의 도입으로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의료법」 제62조에 관한 규정 또한 2000년 1월 12일자로 개정 삭제되어, 「속초시축탁의료인 보수지급조례」를 전부 폐지하고자 함.

속초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4월 8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조례 제 2468 호

## 속초시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

속초시보건소 수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속초시보건소 수가조례”를 “속초시 보건소 수가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5조에 따라”로 한다.

제9조제3항제3호를 삭제하고, 제9조제5항제4호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제증명발급 검사수수료(제7조제1항)

| 구 분                                            | 기준 | 수수료(원)                     | 비고 |
|------------------------------------------------|----|----------------------------|----|
| 1. 건강진단서                                       | 1통 | 500                        |    |
| 2. 신체검사서                                       | 1통 | 500                        |    |
| 3. 일반진단서                                       | 1통 | 500                        |    |
| 4.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서                              | 1통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 의함 |    |
| 5. 사망진단서                                       | 1통 | 500                        |    |
| 6. 기발급증명서 추가발급                                 | 1통 | 300                        |    |
| 7. 1통 추가발급                                     | 1통 | 100                        |    |
| 8. 수질검사 수수료<br>○ 일반세균<br>○ 총대장균군<br>○ 분원성 대장균군 |    |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 의함      |    |

### ◇ 개정이유

보건소에서 진료할 수 없는 항목들과 각종 증명 발급 및 검사 수수료 중  
실효성이 없는 항목들은 삭제하고 일부 수수료는 상위법을 적용함으  
로 조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속초시 도문농요전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4월 8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규칙 제 1351 호

## 속초시 도문농요전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속초시 도문농요전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료의 감면) 「속초시 도문농요전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3호에 따른 “시장이 공익상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국·공립 기관과 각급 학교의 문화예술행사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수관 사용. 다만, 기관 및 학교의 소재지는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로 한정한다.
2. 「지역문화진흥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시에 활동 근거지를 두고 있는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의 활동

제3조(기타사항)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전수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와 수탁자간의 합의로 정한다.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제정이유

도문농요전수관은 2014년 6월에 준공하고, 2015년 6월에 수탁자로 선정된 속초문화원에서 현재 위탁 운영을 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 전수관 사용료 감면근거가 불명확하여 위탁 운영에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기에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감면근거를 명시함으로써 합리적인 전수관 운영을 도모함과 동시에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한 지역문화예술단체의 원활한 활동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함.

## 공 시 송 달 공 고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규정에 따라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반복부과(2015년 하반기) 처분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6. 4. 8. ~ 2016. 4. 22.(14일간)
3. 공시송달대상자

| 성 명  | 주 소                                        | 내 용                             | 부과액(원)    | 송달불능사유 |
|------|--------------------------------------------|---------------------------------|-----------|--------|
| 이혜정애 | 속초시 청대로204번길 40, 507동 905호<br>(조양동, 부영아파트)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및<br>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사전통지 | 269,730   | 폐문부재   |
| 임선여  | 속초시 중앙로 204-6 (동명동)                        | "                               | 638,400   | "      |
| 김규영  | 속초시 영랑해안길 133-11 (영랑동)                     | "                               | 2,645,700 | "      |
| 이옥순  | 속초시 아바이마을길 7-2 (청호동)                       | "                               | 402,960   | "      |
| 방희남  | 속초시 동해대로3950번길 4 (조양동)                     | "                               | 749,040   | "      |
| 하순자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산로12길 28, 401호<br>(양재동, 건웅빌리지)  | "                               | 278,640   | "      |
| 하충용  | 속초시 만리공원길 48-25 (교동)                       | "                               | 128,100   | "      |
| 황순자  | 속초시 미시령로3489번길 57-17(금호동)                  | "                               | 49,980    | "      |
| 박인배  | 속초시 대포항길 180-12, 상가28호 어부박<br>(대포동)        | "                               | 1,265,000 | "      |

#### 4. 공시송달내용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제4항에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반복부과(2015년 하반기)하고자 처분사전통지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 하오니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면 공시 기간 내에 속초시 건축디자인과(☎639-2457)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2016. 4. 8.

속 초 시 장